
2026 예끼마을 봄축제 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



한국정신문화재단
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

(관광연구팀)

I 과업 개요

1. 과업의 목적

- 가. 안동 선성현문화단지 및 예끼마을 일원에서 2026년 예끼마을 봄축제 ‘예끼마을 봄소풍’을 진행함으로써 도산권 첫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안동의 새로운 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
- 나. 방문객들에게 예끼마을에서 아름다운 봄꽃을 관람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안동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

2. 과업개요

- 가. 과업명: 2026 예끼마을 봄축제 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
- 나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2026. 6. 5.(금)까지
- 다. 행사장소: 예끼마을 및 선성현문화단지 일원(산성공원 등 포함)
- 라. 과업예산: 금150,000,000원(금일억오천만원) ※부가가치세 및 제반 경비 포함
- 마. 과업내용: 행사의 기획·홍보·운영, 결과보고 등
- 바.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
 - ▶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 - ▶ 『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』 제7장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)

II 과업의 내용

1. 기본방향

- 가. 안동 예끼마을 산성공원의 자연생태 자원과 예끼마을의 마을 일원의 봄꽃이 어우러진 봄축제로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·운영
- 나. 예끼마을의 역사와 의미를 다양한 체험 및 전시,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및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예끼마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다. 행사장 내·외 적정 체험 참여 코너 구성과 가족 단위의 이용객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구상
- 라. 안동 예끼마을 만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되, 마을 주민을 적극 활용한 아이템으로 구성하되, 일자별, 장소별 관광 콘텐츠의 기획 및 운영
- 마. 공연장의 안전사고(인적, 물적)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관람객 및 마을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계획의 수립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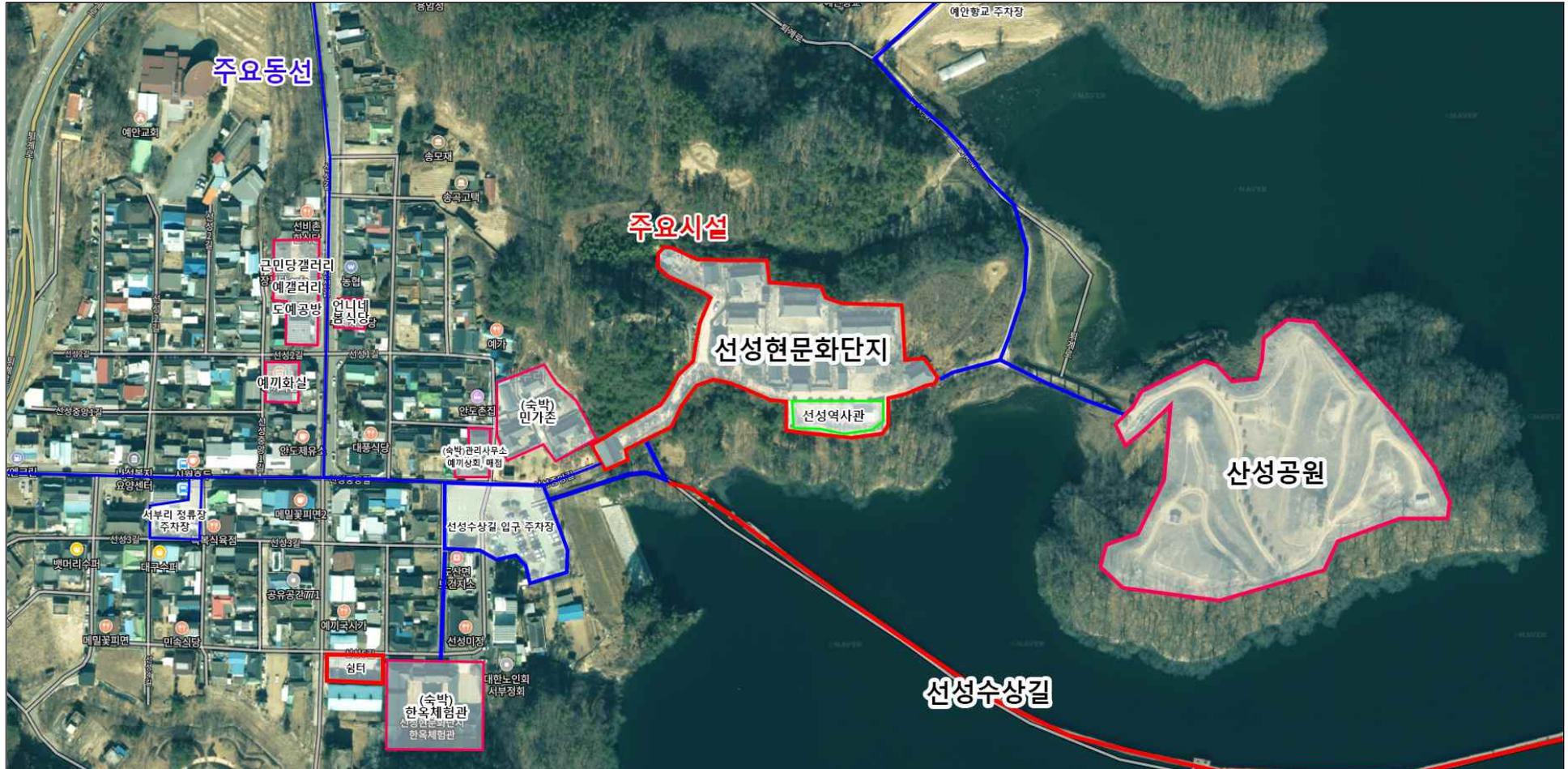
2. 프로그램 구성(안)

※ 최종 행사구성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구 분	포함하여야 할 내용
공식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시 오프닝 / 개막식(개막 퍼포먼스 포함) / 행사장 전체 투어
전시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동 예끼마을 및 봄축제와 어울리는 그림 전시(한복 일러스트 작가 섭외 등) • 마을주민의 예술적 성과물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전시 • 봄꽃 전시(산성공원 내)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토존 제작 및 전시 • 안동 예끼마을의 역사를 관광객과 공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
체험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 단위 관광객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험 • 전통놀이 체험 등 안동 선성현문화단지, 예끼마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체험 • 마을주민을 활용한 봄꽃 간식·추억의 먹거리 체험 등
공 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막식 공연(일자 미정, 제안 및 협의에 따름), 연극, 하모니카 공연 등 • 가족 단위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, 마술쇼 등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관리계획 수립(행사 안전 보험 포함) • 주차 및 교통대책 수립, 홍보대책 등 • 편의시설 운영대책 수립, 설문조사 등

3. 행사장소 현황

※ 개인이 운영하는 장소는 행사 중 활용 시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



4. 과업 범위 및 내용

가. 용역대행 범위

- ▶ 행사 기획·연출·집행·장소 정비·행사 준비 전반
- ▶ 참여자(출연자)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
- ▶ 시설물(무대, 포토존 등) 제작·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
- ▶ 홍보마케팅(홍보·배포·철거 계획 등)에 관한 사항
- ▶ 행사장 안전대책, 청소, 주차,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
- ▶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- ▶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

나. 주제 컨셉 및 주제

- ▶ 축제의 주제는 예끼마을의 봄, 꽃, 예술, 추억, 수변자원을 중심으로 한 컨셉으로 ‘예끼마을 봄소풍’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함

다. 개막식 행사계획(공식행사)

- ▶ 개막식(일자 미정, 제안 및 협의에 따름)
 - 개막식 행사계획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 등 구성에 관한 사항
 - 초청장 제작·발송, 환영사, 축사 등 공식행사에 관한 사항
 - 개막 퍼포먼스 등에 관한 사항
 - 관람객 집객을 위한 이벤트(공연 등)에 관한 사항

라. 행사, 공연, 전시계획 수립

- ▶ 공식행사인 개막식 행사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, 제시
- ▶ 시간대별, 연령대별, 장소별 적정 공연, 전시, 마을 주민 참여를 위한 행사계획을 축제의 콘셉트에 맞게 상세하게 수립하여 제시

- ▶ 관람객의 만족도 고취 및 집중과 분산의 적절한 조화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
- ▶ 행사장 관람객의 재미와 흥미제공을 위한 다양한 포토존의 구성(각종 퍼레이드, 토피어리 등)
- ▶ 기타 행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행사 책임하에 관리·운영

마. 주요 프로그램 구성 방향

- ▶ 개막식 행사
 - 일시 및 장소: 미정, 제안 및 협의에 따름
 - 제안사항: 개막공연, 마을 역사 및 행사 컨셉이 잘 어우러진 개막 퍼포먼스 및 프로그램 구성
- ▶ 공연, 체험·전시행사
 - 일시: 2026. 5. 1.(금) ~ 5. 5.(화)
 - 장소: 예끼마을 및 선성현문화단지 일원
 - 제안내용
 -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고, 안동 예끼마을 및 선성현문화단지, 산성공원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 - 한복·전통·봄꽃 등 행사장과 어울리는 작가 섭외 및 전시·행사 진행
 -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체험행사 추진
 - 축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축제와의 적합성, 독창성,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

바. 행사장 경관연출 계획 수립

- ▶ 봄꽃의 여운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포토존 연출(안) 제시
- ▶ 봄꽃이 식재되는 산성공원 식재 계획에 따라 봄꽃 관람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되, 우천 및 풍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
- ▶ 공연 및 개막식 등의 운영을 위한 무대·음향·특수효과 제시

사. 행사홍보 계획 수립

- ▶ 전국 행사로의 발돋움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 - 현수막, 가로등 현수기 등 옥외광고물 제작·설치
 - 리플릿, 포스터, 초청장 등 인쇄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
 - 스팟 제작 및 방영
 - 맘카페를 포함한 SNS 바이럴 마케팅
- ▶ 홍보물 디자인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▶ 홍보물은 발주처와 협의, 품목, 수량 조정
- ▶ 옥외 광고물(현수막, 포스터 등)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사전 인·허가를 득해야 하며, 이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
- ▶ 기타 행사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부-업 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대행사 차원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음

아. 소품 및 비품

- ▶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대행사가 전담하여 확보·배치·운영하여야 함
- ▶ 부대시설 등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시설운영에 있어 대행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

자. 인 력

- ▶ 대행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인력확보, 배치 등 일정을 준수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무지원업무에 충실하여야 함
- ▶ 행사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에 임해야 함
- ▶ 대행사는 각 행사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▶ 운영요원(행사, 주차, 보안) 및 도우미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발하고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
- ▶ 운영요원 중 마을 주민을 적극 활용하여 배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

차. 안전관리 및 수송

- ▶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▶ 상해보험 가입 관련 증빙 서류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▶ 행사운영과 관련 출연진 수송 등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와 운영은 대행사가 책임져야 함
- ▶ 수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함

카. 주차·교통

- ▶ 행사 기간동안 인력을 배치하여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, 불법 주·정차 관리 등 교통 소통에 집중하여야 함
- ▶ 주차·교통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

타. 사진 촬영 및 영상물 제작

- ▶ 사전 홍보 시 활용할 홍보영상 제작
- ▶ 행사 중 홍보 시 활용할 행사 스케치 영상 촬영 및 공유
- ▶ 사후 기록을 위한 행사 전반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제작
- ▶ 행사 전·중·후 현장 사진 촬영
- ▶ 영상 자료는 세로형 슷폼, 일반 슷팟 등 활용 성격에 맞게 제작

파. 결과보고 및 자료 아카이빙

- ▶ 행사 운영 추진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자료 작성
- ▶ 기획, 운영, 홍보 등 모든 과업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▶ 사진·영상·홍보 시안물의 원본은 각 분야별로 아카이빙하여 제출

하. 기타 과업

- ▶ 행사 시 공연 협조자인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
- ▶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
- ▶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·허가, 관계 기관 협의, 각종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
- ▶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를 완료하여야 하며, 기타 제안서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, 제안 평가 시 발표 자료(행사 포스터 이미지 포함) 질의응답 및 협상 과정에서 추가 과업을 포함한다.
- ▶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함
- ▶ 행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받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사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함
- ▶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

5. 대행사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

- 가.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.
- 나. 계약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(보고)하고, 2026 예끼마을 봄축제 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다.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대행사가 부담한다.
- 라. 제안서의 총 사업비에는 제세(부가세 등), 대행수수료(기획료 포함), 출연료, 임차료, 평가비,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- 마. 발주자는 프로그램 공연 시 출연진, 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할 경우 교체(변경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6. 행사의 시행

- 가. 대행사는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.
- 나. 대행사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자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다. 대행사는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라. 대행사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,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.
- 마. 발주자는 대행사가 사전 준비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바. 발주자는 대행사의 행사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사. 대행사가 행사 일정 또는 공연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별도 계약서에 의거 감액한다. 다만 날씨,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대행사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아. 대행사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,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(무대 등)을 완벽하게 설치하고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 (행사보험 가입 의무, 안전관리계획 수립)
- 자. 대행사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,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,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7. 성과품 제출

가. 보고서 제출

▶ 착수보고

- 과업을 수행할 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시에 착수계, 과업수행자명단,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또한 세부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▶ 중간보고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사 추진사항 및 실행 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.
- 과업수행자는 행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본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보고일자 · 장소 · 참석대상 · 형식 등은 발주처가 결정·통지한다.

▶ 결과보고

- 최종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행사종료 후 2026. 6. 5.(금)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행사 결과보고서(책자) 5부, PDF파일
- 외장하드 1개(사진 · 영상, 홍보 스팟, 디자인 시안, 사후 스케치 영상 포함)

나. 과업기간 및 보고기간의 조정

- ▶ 과업기간(보고, 성과물 제출기간 포함)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. (단,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)

8. 손해배상

- 가. 대행사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행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증명은 대행사에게 있다.
- 나.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대행사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9.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가.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행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.
- ▶ 대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 - ▶ 대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·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
- 나.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- ▶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
 - ▶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10.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 의무

- 가. 대행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대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다. 과업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라.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11. 기타사항

- 가. 과업수행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- 나.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다.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.
- 라.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, 변경할 수 있다.
- 마.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.